

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21. 6. 30.>

국민연금 []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
건강보험 []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
고용보험 []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
산재보험 []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

※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[변경 내용부호]: 1.성명 2.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) 3.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(국민연금만 해당)
4.자격취득일자(국민연금·건강보험만 해당) 5.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[생계급여 수급자에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,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·의료·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](고용보험만 해당) 6.휴직 종료일(고용·산재보험만 해당) 7.자격상실일자(국민연금·건강보험만 해당)

※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「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른 "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내역 척오자 변경 신청서"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건강보험증
수령자 []사업장 주소지 []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

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정우영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[]보험사무대행기관

(서명 또는 인)

국민연금공단 이사장·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·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210mm × 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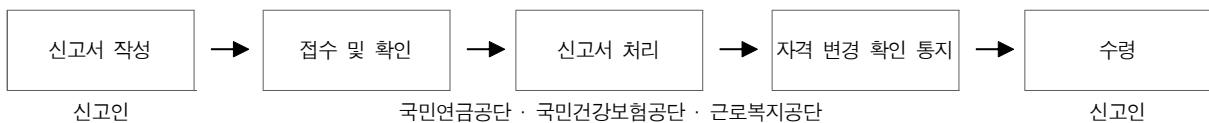
유의사항

1. 근무내용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「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른 "직장가입자(근무처·근무내용) 변동 신고서"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, 고용·산재보험은 「고용보험법 시행 규칙」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"피보험자 전 근신고서"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2.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.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, 고객센터(☎1577-1000), 홈페이지 (www.nhis.or.kr), 모바일 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1.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 · 국내거소신고번호)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(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)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.
 2.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.
 3.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.

처리 절차



국민연금공단 · 국민건강보험공단 · 근로복지공단

신고인